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086
------	------

2022. 2. 10.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2.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나. 서울시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임팩트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필요성

- 소셜벤처의 질적 성장과 투자 수요 급증으로 임팩트 투자사업 필요
  - 전국기준 소셜벤처 매출 성장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20.6% 성장
  - 소셜벤처의 질적 성장에 따라 투자 지원 수요 증가
- 임팩트 투자와 ESG투자를 연계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 확산 가능
  - ESG투자 : 재무적 수익과 비재무적 요소를(환경, 사회, 지배구조) 동시에 고려한 투자
- 성장 단계 소셜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소셜벤처의 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
  - 성장단계 소셜벤처(54.8%)들을 대상으로 투자 진행 시 주식시장 조기 상장을 통해 일반 벤처와의 대등한 경쟁력 확보 가능

### 나. 조합 조성 및 출자 현황

- 조성규모(2018~2020) : 총 595억(서울시 30억, 민간출자자 565억)

#### ※ 임팩트 투자사업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조성년도 (운용사)	조성금액	서울시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자 수	투자금액 ('21.12.기준)	서울시 투자 기업 (총 투자기업)	서울시 기업 투자 금액
총 계	595	30(5%)	18개	418.3	16개(39)	167.5
2018년 (다담인베스트먼트)	145	10(6.9%)	7개	111.5	6개(15)	49
2019년 (비하이인베스트먼트)	150	10(6.7%)	5개	131.8	5개(13)	48.5
2020년 (비하이인베스트먼트)	300	10(3.3%) ※ 2억은 2022년 동의를 받아 집행 예정	6개	175	5개(11)	70

#### 다.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계획

- 추진방향 : 사회투자 전문기관 협력, ESG 소셜벤처기업 특화 펀드 조성
  - ESG기반 비즈니스 영위 소셜벤처기업 우선적 발굴 및 투자
  - 소셜벤처 투자 시장에 우수사례(기업상장, M&A 등) 확산
- 출자금액 : 조합별 사회투자기금 10억원, 민간투자자 90억원 내외
  - 출자조건 : 서울시 출자금의 10억 대비 20억(200%) 이상을 투자
  - 출자재원 :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협력사업 투융자사업비, 민간투자자
- 투자대상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운용사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제2항제1호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나. 예산조치 : 사회투자기금 5억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사회투자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육성하는 임팩트 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출자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나. 서울시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현황

- 서울시는 2018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의 출자를 통한 임팩트투자<sup>1)</sup>조합(이하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과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왔음.
  - 2018년 4월, 사회투자기금 출자(10억원) 동의를 받아 145억원 규모의 1호 투자조합을 결성했으며, 이후 2호, 3호 투자조합이 결성되면서 총 595억원(서울시 출자액 30억원)이 조성되었음.
  - 이 중 지난해 말까지 총 39개의 기업에 418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서울 소재 기업은 16개에 167억원(40.0%)이 투자되었음.

---

1) 수익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 < 서울시 출자 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구 분	1호 임팩트 투자조합	2호 임팩트 투자조합	3호 임팩트 투자조합
조합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1호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2호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구성시기	2018년 11월	2019년 9월	2020년 11월
구성규모	145억원 - 서울시 10억원 - 한국벤처투자도태펀드 100억원 - 대전시 10억원 등	150억원 - 서울시 10억원 - 한국벤처투자도태펀드 105억원 - 우리은행 20억원 등	300억원 - 서울시 10억원 - 한국벤처투자도태펀드 120억원 - 군인명예회 100억원 등
존속기간	8년	8년	8년
투자현황	15개 기업, 111.5억원 (서울시 내 6개 기업, 49억원)	13개 기업, 131.8억원 (서울시 내 5개 기업, 48.5억원)	11개 기업, 175억원 (서울시 내 5개 기업, 70억원)

※ 각 조합별로 서울시 출자금의 200%(20억원)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함.

-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 설립주체와 투자대상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용기관의 책임하에 관리됨으로써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하고 있음.
- 이번 출자금(5억원)은 제3호 출자금 잔금 납입분<sup>2)</sup>(2억원)과 신규로 결성하고자 하는 제4호 투자조합의 2022년 지급분(전체 10억원 중 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제4호는 기존의 투자조합과 유사한 조건으로 결성되고 운용될 예정임.
  - 투자조합은 조성 시 출자금 일부만 우선 납입하고 초기 조성금액이 소진되면 추가 납입하는 구조로 운용되며, 제3호의 경우 2021년까지 8억원을 출자했고 올해에 2억원을 납입하여 완료할 예정임.

2) 2019년 8월 총 10억원으로 출자 동의를 얻어 2020년 2억원, 2021년 6억원을 출자했으며, 2022년 납입분 2억원을 기일 내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함.

- 투자조합의 존속기한은 8년(투자 4년, 회수 4년) 이상이며, 약정에 따라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투자해야 함.
- 한편,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개정(2020.7.)<sup>3)</sup>되면서 연례·반복적인 출자분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매번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sup>4)</sup>.
- 제3호 투자조합은 조성 이전인 2019년에 시의회로부터 최초 동의(10억원)를 받은 후 매년 출자해왔으나, 2021년도에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중도 납입분(6억원)을 시의회 동의 없이 출자한 사례가 있었음.

#### 다.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의 적정성

-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sup>5)</sup>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트렌드<sup>6)</sup>로 자리 잡고 있음.

---

#### 3)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 502 출자금

##### 1. 용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참고조문 신설)

- 4) 임팩트 투자조합은 추가 납입기한까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출자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임.
- 5)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활동을 할 때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임.
- 6) 유럽연합(EU)에서는 지속가능성과 ESG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며, ESG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임팩트 투자를 통해 ESG와 연계하여 사회와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민간 자금과 공동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기존의 사회투자 기금을 통한 용자지원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sup>7)</sup>.
  - 서울시는 사회투자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투자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자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해왔음.
- 그러나 투자조합의 구조상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펀드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 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사회투자기금의 규모와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고, 회수 기간 미도래로 현재까지 결성된 3건의 투자조합의 수익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sup>8)</sup>에서 합리적 판단기준 없이 새로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7) 고용노동부에서는 60억원(국비 45억원, 개인투자자 등 15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2022.1.17.)

8) 서울시 1호 투자조합에서 투자금 조기 회수 성과가 2건 발생(평균 수익률 64.9%)하였으나, 투자금액이 전체의 6.9%(145억원 중 10억원)로 미미하여 전체 수익률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임.

- 2020년 이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와 연도말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는 상황이므로 신규 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는 기존 투자조합의 운용성과를 살펴본 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음.

### < 사회투자기금 규모 및 서울시 전입금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예정)
총 운용규모	30,887	39,611	31,549	16,610
연도말 조성액	13,217	15,742	5,534	3,550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15,600	8,800	8,500	-

\* 2021년도는 결산 전으로 최종계획 수치임.

- 한편, 지난해 9월 출자계획<sup>9)</sup> 수립과 투자심사<sup>10)</sup> 절차를 통해 올해 출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앞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번 출자분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바람직한 재정운용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9) 2022년 제4호 서울시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926, 2021.09.)  
 10) 2021년 제8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2021.10.)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308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용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시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임팩트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필요성

- 소셜벤처의 질적 성장과 투자 수요 급증으로 임팩트 투자사업 필요
  - 전국기준 소셜벤처 매출 성장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20.6% 성장
  - 소셜벤처의 질적 성장에 따라 투자 지원 수요 증가
- 임팩트 투자와 ESG투자를 연계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 확산 가능
  - ESG투자 : 재무적 수익과 비재무적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 동시에 고려한 투자
- 성장 단계 소셜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소셜벤처의 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
  - 성장단계 소셜벤처들을(54.8%) 대상으로 투자 진행 시 주식시장 조기 상장을 통해 일반 벤처와의 대등한 경쟁력 확보 가능

### 나. 조합 조성 및 출자 현황

- 조성규모('18~'20) : 총595억(서울시 30억, 민간출자자 565억)

## ※ 임팩트 투자사업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조성년도 (운용사)	조성금액	서울시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자 수	투자금액 ('21.12.기준)	서울시 투자 기업 (총 투자기업)	서울시 기업 투자 금액
총 계	595	30(5%)	18개	418.3	16개(39)	167.5
2018년 (다담인베스트먼트)	145	10(6.9%)	7개	111.5	6개(15)	49
2019년 (바하이인베스트먼트)	150	10(6.7%)	5개	131.8	5개(13)	48.5
2020년 (바하이인베스트먼트)	300	10(3.3%) ※ 2억은 2022년 동의를 받아 집행 예정	6개	175	5개(11)	70

### 3.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계획

가. 추진방향 : 사회투자 전문기관 협력, ESG 소셜벤처기업 특화 펀드 조성

- ESG기반 비즈니스 영위 소셜벤처기업 우선적 발굴 및 투자
- 소셜벤처 투자 시장에 우수사례(기업상장, M&A 등) 확산

나. 출자금액 : 조합별 사회투자기금 10억원, 민간투자자 90억원 내외

- 출자조건 : 서울시 출자금의 10억 대비 20억(200%) 이상을 투자
- 출자재원 :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협력사업 투·융자사업비, 민간투자자

다. 투자대상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라. 운용사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 2항 1호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나. 예산조치 : 사회투자기금 5억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 차우상 (☎ 2133-5501)